

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벌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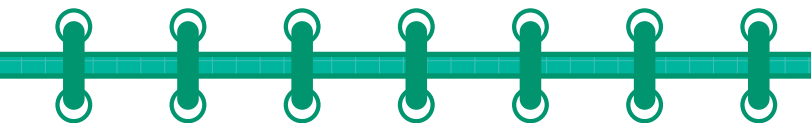
- ✓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자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3조)
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직불금 지급을 제외(환수) 및 3년 간 등록 제한
 - 부정수급자 정보 공개
- ✓ 주요 사례
 - 직불금 대상 품목을 재배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 - 지급대상 농지가 아님(폐경, 휴경 등)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 -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
7 준수사항 이행점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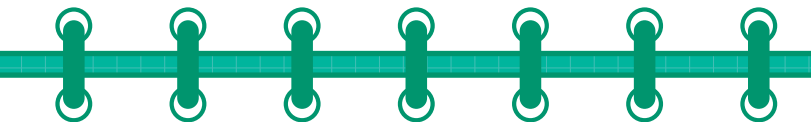
- ✓ 점검기간: (동계) 4~5월 / (하계) 8~10월
- ✓ 점검대상: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및 등록 농지
- ✓ 점검내용: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, 대상품목 재배 면적 등 현장조사
- ✓ 점검기관: 농지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

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사업 주요 일정



- ✓ 전략작물직불 신청 공고 : 1.27.(www.mafra.go.kr)
- ✓ 직불금 신청기간 : 2.15. ~ 3.31.
- ✓ 직불금 등록증 발부 : 4월 중순
- ✓ 동계작물 이행점검 : 4~5월
- ✓ 하계작물 이행점검 : 8~10월
- ✓ 등록자 확정 : 11월
- ✓ 직불금 지급 : 12월

문의처



- ✓ 직불금 신청·접수·지급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- ✓ 준수사항 이행점검 : 농지소재지 농관원
- ✓ 공익직불제 콜센터 : **1644-8778**(내선 2번)
- ✓ AgriX 콜센터(시스템) : **1588-6830**



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첫 시행!

- 기존 논활용직불제 개편 · 확대 -



지/급/대/상

농지(논) 1천㎡ 이상
(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)에서
해당 기간 (전년 11월 ~ 당해 연도
10월까지) 동안 전략작물을
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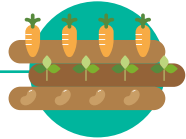


농림축산식품부

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

1 지급대상 농지



- ✓ 농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
- ✓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락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(畓)
 - 종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
 - *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 -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

2 지급대상 농업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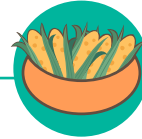


- ✓ (농업경영체 등록)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✓ (1천㎡이상 경작) 폐경, 휴경, 고정시설 면적을 제외하고, 지급대상 농지(논)에서 1천㎡ 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
 - * 녹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- ✓ (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) 등록신청 직전연도 기준
 - * 단, 통계법에 근거한 농업 소득은 제외
- ✓ (주소지가 농촌)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
- ✓ (주소지가 농촌 외)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의 요건을 충족

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 요건은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

- 1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시·구에 주소를 두고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㎡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
 - *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 포함
- 2 같은 시·군·구(연접 시·군·구 포함)에 소재하는 1만㎡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·군·구(연접 시·군·구 포함)에 소재하는 5만㎡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
- 3 '지급대상 농업인'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
 - * 단, 이 경우에도 전락작물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은 있어야 함

3 대상 품목



동계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·사료작물
(식량작물) 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귀리, 감자 등
(사료작물)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
[별표 1]에 따른 목초, 풋베기 사료작물

하계 논콩, 가루쌀, 조사료
(논콩) 백대, 흑태, 청태, 콩나물콩, 서리태, 양태, 밤콩, 울콩, 약콩, 풋콩, 장단콩, 강낭콩, 동부 등 (완두, 녹두, 팥, 잠두 등 미포함)
(가루쌀) 공공기관(중자원, 농진청, 농진원 등)에서 보급하는 '바로미2'를 재배한 경우
(하계조사료)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1]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

- ✓ 하계조사료는 직불금 신청직전연도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, 신청연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함 또한 10월말까지 알곡을 포함하여 수확 완료하고 조사료로 출하하여야 함
- ✓ 대상 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 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
 - *인센티브 대상: 동계 밀·조사료 + 하계 콩·가루쌀(바로미2)
- ✓ 직불 신청시, 필지별 재배품목을 정확히 기재

4 직불금 지급 기준



- ✓ 지급 금액: 지급단가(원/㎡) x 대상품목 재배 면적(㎡)
 - *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
- ✓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
 - 농업인: 30ha / 농업법인: 50ha /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: 400ha
 - *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 농업인 지급 상한은 30ha

5 지급 단가



- ✓ (동 계)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작물은 ha 당 50만원 지급
- ✓ (하 계)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원,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 지급
- ✓ (이모작) 동계(밀·조사료)+하계(가루쌀·콩) 이모작 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

〈전락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(예시)〉

구분	품목	단가(ha당)	
단작	동계	밀 청보리, 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 보리,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	50만원 " "
	하계	콩 가루쌀	100만원 "
		하계조사료	430만원
	이모작	인센티브 대상	밀 - 콩 밀 - 가루쌀 동계조사료 - 콩 동계조사료 - 가루쌀
인센티브 없음		(보리, 귀리 등) 기타동계작물 - 콩·가루쌀 보리 - 일반벼 밀 - 하계조사료	150만원 50만원 480만원
		동계조사료 - 하계조사료	"